韓國心理學會誌 : 社會
Kor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995. Vol.9, No.2, 29~50

처벌크기 판단에 관여하는 정보들의 통합방식[1)]

고 재 홍

경남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의 목적은 처벌크기 판단에 관여하는 정보들을 알아내고, 이들 정보들이 어떻게 결합되어 처벌크기를 결정하는지를 알아보려는 것이다. 인상형성에 관한 정보통합 모형(Anderson, 1974)과 형평이론(Adams, 1965)을 근거로 하여 유도된 처벌크기 판단 공식[처벌크기=(책임크기×피해크기)+(재범가능성 크기)]을 검증하기 위해 세 개의 연구가 수행되었다. 연구1과 연구2에서는 위의 공식이 예언한 대로 처벌대상자의 책임크기와 피해자의 피해크기가 승법적으로 결합되어 처벌크기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그리고 연구3에서는 죄크기(책임크기×피해크기)와 재범가능성 크기가 가산적으로 결합하여 처벌크기를 결정한다는 결과를 보여 주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함의와 제한점을 논의하였다.

처벌대상자에 대한 처벌크기 판단은 실용적인 장면에서 자주 일어나는 것으로서, 심리학에서는 의사결정이나 사회판단(social judgment) 영역에 속하는 연구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변인들을 통합적으로 다룬 경우가 없었다. 단지 처벌대상자의 외모, 배경, 그리고 성품과 같은 특징들이 그에게 부여되는 처벌크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관한 일부 연구들(예: 고재홍, 1994; Dion, 1972; Sigall & Ostrove, 1975)과 판단자의 개인차 변인들이 처벌크기 판단에 미치는 효과를 다룬 연구들(예: 김지현, 1992; Berg & Vidmar, 1975; Rubin & Peplau, 1975)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각기 처벌크기 판단에 영향을 주는 단편적 요인을 다루고 있을 뿐, 여러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통합적 지식을 제공하고 있지는 못하다.

일반적으로 처벌판단자를 합리적 의사결정자로 가정한다(예: Posner, 1985). 설령 판단자(예: 배심원)의 실제 결정이 완전하게 합리적이지 않더라도, 이런 가정은 처벌판단시 그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기 때문에 여러모로 가치있다. 그러나 최근의 여러 경험적 연구들은 엄격히 합리적인 모형이 개인의 의사결정 행동을 잘 설명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예: Herrnstein, 1990). 그러므로 최소한 처벌판단에 관한 이론이나 모형이 성공적이려면, "下向(top-down)의 합리적 법칙과 上向(bottom-up)의 심리학적 원리가 타협된 형태"가 되어야 할 것이다(Hastie, 1993, p. 5). 이런 점에서 심리학적 개념과 원리가 법률적 판단과 같은 영역에 개입될 소지가 크다. 결국 일반인이 어떤 정보들을 근거로 하여, 그리고 이 정보들을 어떤 방식으로 결합하여 처벌판단을 내리는지 살펴보는 것은 전문가의 그것들만큼이나 중요한 심리학적 연구가 될 수 있다.

처벌크기 판단에서의 정보통합 방식을 알아보기

1) 본 논문은 저자의 서울대 박사학위 청구논문 중 일부(제 2장)를 요약한 것이다. 초고에 대해 많은 지적과 조언을 해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께 감사드린다.

위해서는 먼저 처벌크기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 중요 항목(즉 정보)들을 선정해야 한다. 그런 다음 이 항목들이 어떻게 결합되는 지를 알아보아야 한다. 처벌크기 판단에 사용되는 정보들은 (1) 판단자들이 사용하는 처벌기준, (2) 이전의 처벌크기 판단 연구들에서 사용한 독립변인들, 그리고 (3) 실제의 판결에서 고려되는 사항들의 분석에서 알아 낼 수 있다. 다음에는 이들 처벌크기 판단에 사용되는 정보 원천들을 살펴 볼 것이다.

처벌기준

Hogarth(1971)는 캐나다의 판사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피고에게 내린 선고크기, 처벌철학, 그리고 일반적 태도 등을 알아 본 결과, 판사들이 부여하는 선고의 크기 차이는 주로 그들의 처벌철학(punishment philosophy)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을 밝혀 냈다. 그 이후에 몇몇 연구자들(예: Bartol, 1991; McFatter, 1982)이 이를 선고책략(sentencing strategy)이라 부르고, 이것들의 종류를 규명하고 각 선고책략이 선고크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밝히려 하였다.

연구자들마다 종류와 명칭이 다르지만 처벌기준의 종류는 3~5가지이다. 대표적인 처벌기준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갱생(rehabilitation)은 피고에게 잘못했음을 깨우치게 할만큼의 벌을 줌으로써 그가 재범하지 않고 사회에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기준이다. 둘째, 응보(retribution)는 피고에게 그가 지은 죄의 크기만큼 벌을 내려야 한다는 기준이다. 즉 이 기준은 모세의 율법(Mosaic law)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변되는 기준이다. 셋째, 제지(deterrence)는 피고(혹은 다른 사람들)가 벌이 무서워서 다시는 그런 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기준이다[2]. 넷째, 무력화(incapacitation)는 피고가 다시는 죄를 짓지 못하도록 기회를 박탈해야 한다(주로 수감시킴으로써)는 기준이다.

이상의 4가지 기준들이 독립적이지는 않으나 처벌의 목적과 효율성에 대한 각기 다른 측면들을 강조하고 있다. 이 중 세 가지 기준(갱생, 제지, 그리고 무력화)이 공통적으로 처벌의 목적을 '재범방지'에 둔 기준이라 할 수 있다면, 나머지 하나(응보)는 처벌의 목적을 '형평회복'에 둔 기준으로 볼 수 있다[3].

그러나 현대의 법 철학자들은 우리가 처벌대상자에게 벌을 주어야 하는 이유를 어느 하나로 합의하고 있지는 않다. 즉 처벌대상자에게 그가 지은 죄에 상응하는 벌을 부여함으로써 형평(equity)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일 수도, 그를 교화시키기 위해서 일 수도, 그리고(혹은) 사회를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일 수도 있다. 그러나 법 철학자들의 의견 불일치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벌이 어느 정도는 형평회복을 위한 보복적 성질[4]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한다(예: Rose & Prell, 1955).

처벌대상자에게 부여될 처벌크기를 판단하는 사람들이 먼저 해야 하는 일은 그가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가를 판단하는 것과 그의 미래를 예상하는 것이다. 즉 이런 상황에서 판단자들은 처벌대상자의 행위가 얼마나 나쁜 지를 평가하는 것 이외에도, 처벌대상자가 얼마나 위험한 인물인지, 그리고 이를 막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예상하려 한다(Carroll, 1978). 그러므로 특정 처벌대상자에 대한 처벌크기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처벌대상자의 책임크기와 그가 끼친 피해크기뿐만 아니라 그가 얼마나 위험한 인물인가에 대한 평가(즉 재범가능성의 평가)를 고려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특정 처벌대상자에게 얼마만큼의 벌을 부여할 지를 결정할 때, 판단자들은 형평의 회복을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되고, 아울러 그 벌로 인한 재범방지의 효과를 고려한다는 것이다. 실제 장면에서도 처벌대상자에게 부여되는 전체 처벌크기를 분석하면

2) 그런 의미에서 특정 제지(special deterrence)와 일반 제지(general deterrence)는 같은 것으로 간주된다.

3) 박광배와 홍성진(1993)은 선고의 비일관성을 유발시키는 한 요인으로서 선고목적을 언급하면서, 선고목적을 응보목적과 범죄감소목적으로 구분하고 있다(p. 79).

4) 보복(retaliation)은 원래 피해자 본인이나 그와 관련된 사람이 가해자에게 가하는 것인 반면, 응보(retribution)는 국가와 같은 제3자가 대신하여 처벌을 가하는 것이다. 그러나 처벌을 가하는 주체가 다를 뿐, 내용은 비슷하다.

표 1. 법률가들이 처벌대상자에게 처벌을 내릴 때 고려한 사항들의 분류

피해크기에 관한 내용	책임크기에 관한 내용	재범가능성에 관한 내용
피해액수가 적어…	우발적 범행이었다.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
상해정도가 경미하여…	선배의 유혹에 빠져…	재범의 우려가 없어…
피해품이 회수되었기에…	흥분상태였다.	전과가 있다.
피해자에게 변상하여…	순간적 충동으로…	상습적이다.
피해자와 합의됨.	불우한 환경때문…	전문범이다.
경찰관을 폭행(피해 큼)	제대로 교육받지 못해…	절도습벽이 있어…
쇠파이프로 때림.	배운 것이 그것밖에…	반성의 빛이 없어…
피해자가 처벌을 주장.	부모가 선도하지 못해…	개전의 정이 없다.
피해자에게는 값진 것.	격분하여…	초범이며, 어리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적어…	피해자측 잘못도 있다.	인상이 나쁘다.
	피해자의 품행이 나빠…	보복가능성이 크다.
	계획적이었다.	노령이다.
	유부녀가 먼저 유혹해…	전산기술을 지닌 자로...
	피해자(부인)의 내조도 문제가 있다.	직업이 없어 재범가능...
		동네 불량배로서...
	피해자 과실도 인정됨.	생활이 불성실하여...

그가 행한 행위 그 자체에 대한 처벌과 그의 도덕성에 대한 처벌로 구성되어 있다(Hommers & Anderson, 1989 참조). 즉 처벌대상자의 행위가 나쁜 행위일 수록 그리고 처벌대상자가 도덕적으로 나쁜 사람이라고 판단될 수록, 그에게 부여되는 처벌은 크다. 행위 자체에 대해 벌을 내리는 주 이유는 그 행위의 피해로 인한 가해자-피해자간의 불형평을 회복시키기 위함이고(Austin, Walster, & Utine, 1976), 처벌대상자의 도덕성에 대해 처벌을 내리는 이유는 그의 재범가능성 때문이다(Carroll & Payne, 1977).

실제의 판결에서 고려되는 사항

처벌대상자에게 내릴 처벌크기를 결정할 때 위의 세 요인(피해크기, 책임크기, 그리고 재범가능성 크기)이 주로 고려된다는 사실은 일부의 경험적 연구에서도 엿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김지현(1992, 예비연구)은 법전문가들(총 7명)이 처벌대상자에게 형량을 선고할 때 염두에 두는 점이 무엇인지를 개방형 물음으로 물었다. 그 결과 모두 120여 가지가 수집되었다(김지현, 1992, pp. 18-22 참조). 그 내용들은 다음의 3범주로 재분류될 수 있다[5].

이외에도 한편 앞서 언급한 것처럼, 법 철학자들은 법률가들이 지닌 법의 목적에 대한 이념과 철학이 각기 다르고 이것 때문에 처벌크기가 다를 수 있다고 가정한다. 또한 이 처벌기준들이 서로 양립될 수 없음도 어느 정도 분명한 것 같다(Talarico, 1979 참조). 이런 근거로 많은 연구자들(예: 김지현, 1992; McFatter, 1982)도 처벌기준을 일종의 태도나 가치관과 같은 개인차 변인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처럼 처벌철학이 일종의 태도나 가치관이라면 특정 가치관을 지닌 판단자의 판결행동은 여러 사건 판결에서 일관성을 지녀야 한다. 그러나 연구자들(예: Hogarth, 1971)은 판단자들이 하나의 일관된 처벌기준을 지니고 여러 사건을 판결한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실제로 Hogarth는 "바쁜 판사에게 처벌철학은 별 의미가 없다"(p. 68)고 강조하였다. 오히려 모든 판단자들이 여러 종류의 처벌기준을(어느 정도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共有한다고 가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즉 모든 판단자들은 처벌대상자에게 처벌을 부여할 때 피해자의 피해크기, 처벌대상자의 책임크기,

5) 김지현(1992)은 수집된 120여 가지를 18개의 범주(그는 이를 판결원칙이라 보았음)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재범가능성 크기를 고려할 것이다. 이때 판단자들이 지닌 처벌철학은 판단자로 하여금 그 사건의 어느 한(혹은 그 이상) 측면을 더 강조하도록 만드는 '지침'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다루어야 할 사건의 유형이나 사회적 맥락(예: 범죄 발생률)은 판단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지닌 처벌철학들 중 어느 하나를 더 부각되게 느끼도록 만들 가능성이 있다.

이전 연구들에서 사용한 독립변인

처벌크기 판단에 관련된 연구들에서 처벌크기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진 요인들을 정리하면 크게 세 가지 범주이다. 첫째,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복구 가능성 여부(고재홍, 1991 ; Shaver, 1970a), 그 사건에서 처벌대상자 자신이 입은 피해의 정도(Austin et al., 1976), 그리고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김지현, 1992 ; Jones & Aronson, 1973)는 각기 처벌대상자에 대한 처벌크기를 다르게 만드는 요인들이지만 이것들은 공통적으로 '지각된' 피해크기(severity of outcome)를 매개로 하여 처벌크기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피해크기가 (전적으로는 아니지만) 처벌크기를 결정하는 요인 중의 하나라는 경험적 증거는 상당히 확고하다. 어떤 연구들(예: 고재홍, 1992; Rosen & Jerdee, 1974)에서는 피해크기를 직접 조작하여 그것이 처벌대상자의 처벌크기(종속변인으로 형량이나 벌금액수 등을 사용했음)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 본 반면에, 또 다른 어떤 연구들(예: 김지현, 1992; Jones & Aronson, 1973; Landy & Aronson, 1969; Seligman, Brickman, & Koulak, 1977)은 피해자의 특징(예: 피해자의 지위)을 사용하여 간접적으로 피해크기를 조작한 다음, 그것이 처벌대상자의 처벌크기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았다.

전자에 해당하는 연구들 중에서 McFatter(1978)는 여러 종류의 범죄유형(피해크기에 따른 유형으로 볼 수 있음)을 피험자들에게 제시한 후, 범인에게 적절한 형량을 내리도록 하였다. 그 결과 좀도둑질, 폭력, 절도, 강간, 그리고 살인 등에 대해 대학생 피험자들이 내린 평균 형량크기는 살인(징역 9.56년)이 가장 컸고 그 다음이 강간(8.76년), 강도(6.65년)의 순서로 나타나 피해크기가 클 수록 처벌크기가 크다는 사실을 밝혀 냈다.

둘째, 처벌대상자의 의도나 부주의(Carroll, Perkowitz, Lurigio, & Weaver, 1987), 그가 결과를 예견한 정도(Thomas & Parpal, 1987), 그리고 그가 그 행위에 관여한 정도(고재홍, 1992) 등은 처벌크기 판단에서 처벌대상자의 책임크기 효과를 다룬 연구들로 볼 수 있다.

책임크기의 지각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지적한 대표적인 사람은 Heider(1958)이다. 그는 어떤 결과의 발생에 환경적 요인이 어느 정도 기여했느냐에 따라 행위자의 책임(responsibility)크기가 다르게 지각된다고 하였다. 즉 환경적 요인이 결과발생에 미친 영향력이 클수록, 행위자에게는 책임이 적게 부여된다는 것이다(Heider, 1958, p. 113). 뿐만 아니라 Heider는 책임이란 개념이 사용되는 형태들을 다음의 5수준에 따라 구분하였다: (1) 연합(association)기준 - 즉 어떤 결과가 행위자와 연합되어 있는지의 여부, (2) 인과성(causality)기준 - 즉 어떤 결과의 원인이 행위자 쪽에 있는지의 여부, (3) 예견성(foreseeability)기준 - 즉 행위자가 그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의 여부, (4) 의도성(intentionality)기준 - 즉 어떤 결과가 행위자의 의도에서 나온 것인 지의 여부, 그리고 (5) 정당화(justification)기준 - 즉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를 이유나 변명을 통해 정당화할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위의 기준에 따르면, 연합, 인과성, 예견성, 의도성, 및 정당화의 내용은 모두 처벌대상자의 책임크기를 결정하는 것들로서 책임크기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조작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Thomas와 Parpal(1987)은 운전사고를 낸 운전자가 사고가능성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결과예견성)를 조작하여 그에게 내려진 처벌(여기서는 벌금)의 크기를 알아보았다. 또한 Carroll과 Payne(1977)은 폭행의 원인(포악한 성품 혹은 만취 때문)을 변화시켜 그에게 내려진 집행유예 기간을 알아보았다. 예상대로 이들의 연구들에서 처벌대상자의 책임이 작은 경우보다는 큰 경우에서 큰 처벌이 내려진다는 결과를 얻었다.

셋째, 처벌대상자가 신체적 매력도나 성격특성 상

에서 매력적인 경우는 비매력적인 경우에 비해 더 관대하게 처벌된다는 연구결과들(예: Sigall & Ostrove, 1975)의 매개과정은 처벌대상자의 지각된 재범가능성 크기일 것이다(고재홍, 1994; Esses & Webster, 1988 참조).

처벌대상자의 재범가능성 크기는 그가 지닌 배경정보(예: 전과), 외모, 그리고 성품과 같은 여러 요인들을 근거로 추정된다(고재홍, 1994 참조). 실제의 사법장면에서도 사건의 내용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여겨지는 처벌대상자의 여러 측면들이 그의 유죄/무죄 판단과 처벌크기 판단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예: Kalven & Zeisel, 1966). 여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변인들로서는 처벌대상자의 전과기록, 性, 사회적 경력, 인종, 사회경제적 지위, 그리고 신체적 매력도 등이 있다. 이 변인들은 법률외적 요인(extralegal factor)[6]이라 불리고(Bierhoff, Buck, & Klein, 1989), 판단자들이 지닌 고정관념에 의해 처벌대상자의 유죄/무죄 판단이나 처벌크기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arnett & Feild, 1978; Nemeth, 1981 참조).

Monahan(1941)이 사법적 장면에서 아름다운 여인이 그렇지 못한 여인에 비해 고소 당한 범죄에서 유죄를 선고받는 경우가 더 적다는 사실을 지적한 이후로 여러 연구들이 이런 효과를 내는 법률외적 요인들을 찾으려 노력하였다. 경험적 연구로서는 이 분야의 최초 중의 하나로 꼽히는 사회학자 Rose와 Prell (1955)은 대학생 188명으로 하여금 다양한 사회적 계층의 여러 피고들에게 벌금형과 징역형을 구형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피험자들은 사회계층이 높은 피고에게 더 많은 벌금형을 내렸으나, 징역의 크기에서는 피고의 사회계층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위의 결과들이 제시되자 심리학자들이 이 주제를 실험 방법으로 다루기 시작하였다. 심리학에서 최초로 이 분야의 실험연구를 실시한 Dion(1972)은 성인 피험자들로 하여금 똑같은 잘못을 저지른 (외모가 다른) 아동에게 Likert 척도 상에서 '벌'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그들이 부여한 처벌크기는 처벌대상자의 외모에 의해 영향받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처벌대상자를 성인으로 묘사한 Efran(1974)은 같은 범죄를 저지른 피고일지라도, 외모가 비매력적인 피고에 비해 매력적인 피고에게 부과되는 벌이 훨씬 관대하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보여 주었다.

처벌대상자의 매력도와 처벌크기를 다룬 연구들은 크게 매력도의 조작방식에 따라 세 범주로 분류될 수 있고, 그 중 첫번째 유형은 처벌대상자의 외모를 다룬 연구들이다(예: Efran, 1974; Sigall & Ostrove, 1975). 두번째 유형은 처벌대상자의 성격특성이나 개인적 배경정보를 다룬 연구들이다(Landy & Aronson, 1969; Kaplan & Kemmerick, 1974; Nemeth & Sosis, 1973; Reynolds & Sander, 1975; Sigall & Landy, 1972). 세번째 유형은 처벌대상자와 판단자간의 태도 유사성을 조작한 연구들이다(예: Mitchell & Byrne, 1973).

여러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처벌대상자의 매력도를 다룬 여러 연구들에서 실제로 매력도는 처벌대상자가 긍정적 혹은 부정적 특성을 지닌 것으로 알려 줌으로써 조작되었다(예: Sigall & Landy, 1972). 처벌대상자의 특성은 평가적 측면에 관한 것이므로 이는 처벌대상자에 대한 도덕성 평가(혹은 재범가능성 평가)를 조작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또한 처벌대상자의 외모를 조작한 연구들(예: Dion, 1972)도 후광효과(halo effect)에 의해 사실상 처벌대상자의 특성을 조작한 셈이며, Dion의 연구에서 똑같은 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도 외모가 매력적 아동은 비매력적 아동에 비해 평가적으로 좋은 특성을 지닌 것으로 지각되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런 부류에 속하는 대부분의 연구에서 처벌대상자에 대한 평가가 좋은 조건에서 처벌은 관대하였다.

그러나 처벌대상자의 매력도가 어떤 사건(예: 자동차 사고)의 처벌대상자에 대한 재범가능성 추정에는 이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강간죄를 지은 피고의 외모가 처벌크기에 영향을 주는 이유는 잘 생긴 피고가 못 생긴 피고보다 차후에도 강간을

6) (정확한 정의는 없으나) 법의 형평상 피고의 유죄여부 평결이나 처벌크기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하는 요인들(예: 인종, 성, 외모, 및 직업)이지만, 이것들이 유발한 부정확한 고정관념에 의해 평결이나 처벌크기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요인들이다.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Esses & Webster, 1988). 그러나 운전자의 부주의에 의한 교통사고의 경우 피고의 외모가 부여되는 처벌크기에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는 잘 생긴 피고가 못 생긴 피고보다 차후에도 교통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되지 않기 때문이다(고재홍, 1994). 즉 위의 경우에서 피고의 외모는 그의 강간-재범가능성 추측에는 유용한 단서가 되지만, 사고-재발가능성 추측에는 유용한 단서가 되지못하기 때문으로 해석될 수 있다. 처벌대상자의 재범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수록 처벌크기가 커지기 때문에(Carroll & Payne, 1977), (불행히) 법률적으로는 직접 처벌크기와 관계되지 않는 처벌대상자의 여러 특징이 처벌크기에 영향을 주게 된다.

처벌크기 판단에 사용되는 정보들의 통합방식

여러 정보들을 통합하여 하나의 판단에 이르는 과정을 다룬 대표적 이론은 Anderson(1965, 1974, 1981)의 정보통합 이론(information integration theory)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처벌크기를 결정하기 위해서 관련된 정보들을 두 단계로 처리해야 한다. 그 하나는 관련된 정보들을 수량적으로 평가하는 것(valuation)이고, 다른 하나는 평가된 결과들을 통합하는 것(integration)이다. 평가는 각기 다른 원천에서 나온 물리적 혹은 의미적(semantic) 정보들을 동일한 정신척도(mental scale)의 값으로 변환하는 것이다. 반면에 통합은 동일 척도로 변환된 여러 심리적 표상들(representations)을 하나의 판단으로 결합하는 것이다.

Kaplan과 Kemmerick(1974)은 처벌대상자에게 부여되는 처벌크기가 처벌대상자(여기서는 교통사고를 낸 운전사)의 잘못크기와 그의 성격평정치(교통사고와는 무관한 것임)가 가산됨으로써 결정될 것이라고 제안한 이후, 몇몇 연구자들(예: Ebbesen & Konečni, 1975)이 정보통합의 측면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다. Ebbesen과 Konečni(1975)는 (보석금 크기)=|w_1(범죄의 심각성)+w_2(전과기록)+w_3(도주가능성)+w_4(검사가 추천한 보석금 크기)+w_5(변호사가 추천한 보석금 크기)|/Σw_i라는 공식을 제안하여, 피고에 대한 보석금(여기서의 처벌크기임)이 가중-평균모형의 원리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예언하였다. 그러나 Ebbesen 등(1975)의 연구결과는 가중-평균모형을 지지하지 않았다. 즉 이들이 사용한 독립변인들의 주 효과뿐만 아니라 상호작용 효과들(예: 범죄의 심각성과 변호사가 추천한 보석금 크기간의 상호작용 효과)이 유의하였다[7]. 한편 이들의 연구에서 종속변인(보석금 액수)의 변산을 가장 많이 설명해 주는 변인은 검사가 추천한 보석금 크기이었으며, 범죄의 심각성과 전과기록은 종속변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았다. 또한 이들의 연구에서는 종속변인도 최종적인 처벌크기가 아닌 보석금 크기였음으로 위의 공식은 일반적 처벌크기 판단에 적용되는 공식이라 보기 어렵다.

Ebbesen 등의 연구결과가 그들의 예언을 지지하지 못한 여러 이유 중의 하나는 Ebbesen 등이 사용한 정보들 중 범죄의 심각성, 검사가 추천한 처벌크기, 그리고 변호사의 처벌크기가 처음부터 독립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처벌크기 판단에 사용되는 정보의 선정이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가능한 또 다른 이유는 처벌크기 판단에 사용되는 정보통합의 방식이 원래 가산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다른 사회적 정보들의 통합(예: 인상형성)과는 달리 처벌크기를 판단하는 수식(algebra)은 관련 정보들의 평가치에 대한 단순한 가산이나 혹은 그것들의 평균에 의해 결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첫째, 이전의 인상형성 연구들(예: 조긍호, 1982)에서도 종속변인의 차이에 따라 정보통합의 방식이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예를 들어 종속변인이 '좋아한다-싫어한다'의 척도로 된 연구들에서는 대체로 평균모형이 지지를 받은 반면, '좋다-나쁘다'의 척도를

7) 만약 처벌크기에 영향을 주는 정보들(요인들)이 가산적으로 결합되면, 이 요인들의 변량분석에서 주 효과들은 유의하지만,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에 이 요인들이 비가산적 방식으로 결합되어 있으면 변량분석에서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난다(Hommers & Anderson, 1989 참조).

사용한 연구들에서는 가산모형이 지지받는 경향이 있었다(조긍호, 1982, 연구10 참조). 그러므로 종속변인이 처벌크기인 경우는 또 다른 방식으로 정보통합이 이루어 질 가능성이 높다.

둘째, 인상형성 연구들(예: 조긍호, 1982; Anderson, 1965)에서 표적인물의 인상형성 혹은 대인평가를 목적으로 피험자에게 제공되는 정보들은 비교적 동질적인 것들로서, 이 정보들은 단일 차원(즉 평가차원)으로 쉽게 수렴될 수 있다. 그러나 처벌대상자의 처벌크기를 판단할 때 사용되는 정보들은 원천적으로 다수의 여러 차원이다. 즉 인상형성 연구에서 표적인물의 인상평가를 위해 제시되는 정보들은 공통적으로 성격특성 형용사들(혹은 행동들)이고, 이것들은 처음부터 한 차원(평가차원)에서 나열될 수 있다는 점에서 동질적이다. 그러나 처벌크기의 결정에 사용될 것으로 보이는 피해크기, 처벌대상자의 책임크기, 그리고 재범가능성 정보들은 서로 이질적이다. 이질적인 정보의 통합방식은 보다 복잡한 형태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

셋째, 처벌크기 판단에 사용될 것으로 여겨지는 정보들 중 책임크기와 피해크기는 처벌의 필요조건인 반면에, 처벌대상자의 재범가능성 판단치는 처벌의 필요조건이 아니다. 즉 각 정보들의 처벌크기 판단에서 하는 기능이 차등적이다. 이런 특징들 때문에 처벌크기 판단에 필요한 정보들의 통합방식은 비가산적일 가능성이 있다.

이상의 가능성들은 처벌크기 판단을 위한 정보의 통합이 단순한 가산방식이 아닐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음에서는 처벌크기 판단에 사용될 것으로 보이는 제3의 정보통합 방식을 찾아 볼 것이다.

처벌크기 판단에서의 정보통합에 포함될 정보들을 알아내기 위한 분석에서 판단자들이 사용하는 처벌기준들을 재분류하면, 처벌기준은 죄크기(형평회복을 위한 기준)와 재범가능성 크기(재범방지를 위한 기준)를 중시하는 기준으로 분류된다. 만약 처벌판단자가 합리적 의사결정자라면(Posner, 1985), 그는 처벌대상자의 죄크기와 재범가능성 크기를 모두 고려하여 처벌크기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 두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처벌크기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의 공식 (1)이 된다.

$$\text{처벌크기} = f\ (\text{처벌대상자의 죄크기} + \text{재범가능성 크기}) \quad \cdots\cdots (1)$$

위의 공식 (1)에서 우리가 죄크기에 따라 처벌크기를 판단하는 이유는 형평이론에서 도출할 수 있다. 왜냐하면 처벌대상자에게 처벌을 부여하는 상황은 피해(혹은 예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이고, 처벌의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형평을 회복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Rose & Prell, 1955).

그러므로 특정 처벌대상자에게 처벌을 부여하는 일은 그에게 그 자신의 행위결과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는 일종의 사회교환(social exchange) 과정으로 볼 수 있다. 형평 이론(예: Adams, 1965; Walster, Berscheid, & Walster, 1973)의 기본적 생각은 자신이 포함된 사회교환 관계뿐만 아니라, 자신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양자간의 관계에 대한 사회적 지각과 행동에도 적용된다. 즉 제 3자도 다른 양자관계 속에 불형평이 존재함을 발견하면, 정의(justice)를 회복시키려는 행동을 한다(예: Baker, 1974). 처벌크기 판단 상황에서도 판단자는 처벌대상자에게 적절한 크기의 대가(배상이나 처벌)를 주기 위해, 상호작용을 한 두 사람(가해자와 피해자)의 투입(inputs)과 성과(outcomes)에 대한 정보들을 수집하려 할 것이다(DeJong, Morris, & Hastorf, 1976 참조). 그런 다음, 두 사람간의 관계가 불형평 관계라고 판단되면, 제 3자인 판단자들도 고통(distress)을 느끼고, 이들 간의 관계를 형평 관계로 회복시켜 주고 싶어하는 동기가 생긴다는 것이다(예: Austin et al., 1976). 배심원이나 재판관들은 이와 같은 제 3자의 역할을 하는 전문가라 할 수 있다. 즉 처벌을 부여하는 일은 양자간에 생긴 불공정에 대한 반응의 일종이다. 만약 이를 피해자에게 회복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면(즉 보복의 기회를 주면) 그는 자신이 입은 피해보다 가해자에게 더 큰 보복을 가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사회체제를 붕괴시킬 위험성이 있다. 그러므로 거의 모든 사회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불형평을 직접 회복시키지는 못하도록 제도화되어

있다(Allen, 1982).

어떤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나 사회에 피해를 준 상황에서 정의란 이들 간에 형평을 회복시킴으로써 지켜지고(Wrightsman, 1991), 그 방법은 제 3자가 죄를 지은 사람에게 그의 죄크기 만큼의 벌이나 배상을 부여하는 것이다. 즉 여기서 형평이란 '죄크기 만큼의 처벌을 주는 것(즉 처벌크기=죄크기)'이다. 이처럼 처벌을 응보나 형평의 회복으로 보는 관점은 오래 전부터 실제로 통용되어 왔고, 모세의 율법이 그 대표적 예이다. 이를 처벌의 공리주의 이론 혹은 경제학적 이론이라 부른다(Posner, 1985). 그러므로 논의의 핵심은 처벌대상자의 '죄크기'를 무엇으로 어떻게 산출하느냐에 있다.

이는 형평 공식에서 유추될 수 있다. Adams의 기본적 형평 공식은 다음과 같다[8]. 여기서 O는 성과, I는 투입이고 첨자 A와 B는 각각 상호작용한 두 사람을 가리킨다.

$$\frac{O_A}{I_A} = \frac{O_B}{I_B} \quad \cdots\cdots (2a)$$

O_A= A의 성과, I_A= A의 투입

O_B= B의 성과, I_B= B의 투입

위 공식을 A의 성과를 중심으로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O_A = \frac{O_B \times I_A}{I_B} \quad \cdots\cdots (2b)$$

공식 (2b)의 성과들과 투입들을 처벌판단 상황에 적합하도록 다시 정의할 수 있다. 즉 부정적 결과의 발생은 가해자-피해자간의 불형평 관계를 성립시킨 것이므로 이를 본 제 3자(예: 재판관)는 가해자에게 부정적 성과(처벌)를 부여함으로써 이들 간의 관계를 형평 관계로 회복시키려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A를 처벌대상자(여기서는 가해자)라 하고 B를 피해자(와 사회)라 한다면, O_A는 처벌대상자의 성과(이 경우는 처벌대상자에게 부여될 처벌크기), O_B는 피해자의 성과(이 경우는 피해자와 사회가 입은 피해크기), I_A는 처벌대상자의 책임크기, 그리고 I_B는 피해자와 사회의 책임크기로 각각 정의될 수 있다. 분자인 $O_B \times I_A$는 '지각된 죄의 크기'로 볼 수 있다. 결국 처벌대상자의 행위로 발생한 피해가 클 수록, 그리고 그의 책임이 클 수록, 그가 지은 죄는 크다고 정의된다.

공식 (2b)의 의미는 처벌대상자(A)에 부여되는 처벌크기(O_A)는 A가 피해자와 사회(B)에게 끼친 피해의 크기(O_B)와 그의 책임크기(I_A)의 곱을 피해자(B)의 책임크기(I_B)로 나눈 값이 된다. 즉 공식 (2b)의 분자에 의해 죄크기=피해크기×책임크기이고, 형평이론에 의하면 죄크기에 처벌크기를 일치시키는 것이 형평의 회복이다. 그러므로 처벌크기 판단에 형평 이론을 적용하면 처벌대상자의 죄가 클 수록(부정적 결과의 피해가 심각할 수록, 그리고 처벌대상자의 책임이 클 수록) 그에게 큰 처벌을 내리는 것이 형평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다.

공식 (2b)의 분자에서 볼 때, 피해크기(O_B)가 일정하다면 죄크기는 책임크기와 비례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공식 (2b)의 분모에서 볼 때, 처벌대상자에 대한 죄크기는 피해자의 책임크기와 반비례한다.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책임이 클 수록, 가해자의 책임은 크게 지각되기 때문에(Thomas & Parpal, 1987), 분모는 $1-I_A$로 볼 수 있다.

요약하면 공식 (2b)의 분자에 의해 처벌대상자에게 부여되는 죄크기는 다음의 공식 (2c)와 같이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공식 (2c)에 의하면, 처벌대상자의 죄크기가 피해자의 피해크기와 처벌대상자의 책임크기의 곱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9]

처벌크기 ~ 죄크기 = m(피해크기 × 처벌대상자의 책임크기) ..... (2c)

---

8) Walster 등(1973)의 형평 공식은 Adams의 그것과 약간 다르다. 그러나 여기서는 형평의 개념을 이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가장 간단한 Adams의 형평 공식을 선택하였다.

9) 공식 2c에서 m은 실제로 1/IB 혹은 1/(1-IA)로 표현된다. 즉 책임크기에 따른 가중치의 역할을 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공식을 간략하게 하기 위하여 이를 상수로 간주하였다(익명의 심사위원께서 이 부분에 대한 비평이 있었음을 밝혀둔다).

처벌크기를 결정하는 또 하나의 요인은 재범가능성 크기이다. 이미 기존 연구들에서 처벌대상자의 성격특성, 외모, 그리고 전과여부와 같은 특징이나 그 사회의 범죄율과 같은 요인이 그에게 부여되는 처벌크기에 영향을 준다는 보고들이 있다(고재홍, 1994; Kalven & Zeisel, 1966 참조). 또한 처벌철학의 내용 중 갱생이나 제지는 판단자들이 처벌대상자의 처벌크기를 결정할 때, 그의 '죄크기'가 아닌 또 다른 측면들을 고려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이미 처벌대상자에 대한 잠정적 처벌크기가 결정된 다음에 또 다른 요인들을 고려하여 정해진 처벌크기를 조정함을 시사한다. 즉 처벌대상자의 특징이나 판단자의 처벌철학은 책임크기와 피해크기의 곱이 0보다 큰 경우에 작동하는 변인들로 보아야 할 것이다.

처벌대상자가 지닌 특징에 의해 혹은(그리고) 판단자가 지닌 처벌철학에 의해 동일한 죄를 지은 사람(피해크기×책임크기의 값이 동일한 사람)이라도 그에게 부여되는 최종 처벌크기는 다를 수 있다. 왜냐하면 처벌대상자의 특징이나 처지가 궁극적으로는 그의 '재범가능성 크기'의 지표가 되기 때문(Dion, 1972)에, 이것들로 추정된 재범가능성이 큰 사람에게는 추가적인 더 큰 처벌이 부여된다(Carroll & Payne, 1977).

결국 처벌대상자의 처벌크기는 일차적으로 그의 죄크기에 의해 결정된 다음, 그의(혹은 다른 사람들의) 재범가능성 크기에 의해 조정된다고 볼 수 있다. 당연히 재범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그의 죄크기보다 더 큰 벌이 부여될 것이다[10]. 만약 처벌대상자의 처지나 특징에 관한 정보가 제시되지 않은 경우는 재범가능성의 항목을 고려할 수 없으므로, 이 때는 그의 죄크기(피해크기×책임크기)에 의해서만 처벌크기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공식 (1)과 공식(2d)에 의해 처벌크기 판단 공식은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text{처벌크기} = f\ [(\text{피해크기} \times \text{책임크기}) + \text{재범가능성}\ ] \quad \cdots\cdots (3)$$

그러나 위의 공식 (3)은 죄크기가 0(零) 이상인 경우만 적용될 수 있는 공식이다. 즉 피해크기나 책임크기 중 어느 하나라도 전혀 없는 경우(크기가 0인 경우)는 위의 공식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둘 중 어느 하나라도 0이면 '죄 없음'의 의미가 되고, 죄가 없는 사람을 처벌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는 법률적 처벌규정(예: 형법)과 약간 다르다. 위의 공식에 의하면, 어떤 피해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의 책임이 (어느 정도 이상으로) 처벌대상자에게 귀속된다면 그는 '죄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얼마만큼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근대 형법의 기본 원리인 罪刑法定主義에 따르면 처벌대상자가 죄를 지은 경우라도 그 죄가 관련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그를 처벌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일반인들의 처벌개념과 법률적 처벌개념은 다를 수 있다.

위의 공식 (3)에 따르면 여러 경우에서 처벌대상자에게 부여할 처벌크기를 예측할 수 있다. 즉 처벌대상자에 대한 처벌크기는 피해크기와 책임크기 요인이 포함된 변량분석에서 피해자의 '피해크기'와 처벌대상자의 '책임크기'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할 것이다. 한편 피해크기와 책임크기에 의해 결정되는 '죄크기'와 '재범가능성 크기'간에는 가산적 효과(두 요인의 주 효과는 유의하지만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음)를 보일 것으로 예언할 수 있다. 이는 각각 연구1과 연구2, 그리고 연구3에서 다룰 것이다.

연구1~3에서 공통적으로 법률 사례를 이용하였다. 연구의 목적이 직접적으로 법률적 처벌에 관한 것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 사례를 이용한 이유는 법률 사례에서 피해크기, 책임크기, 및 재범가능성과 같은 독립변인들의 조작이 용이하기 때문이었다.

연구 1과 연구 2

연구1과 연구2는 공통적으로 처벌크기 $= f$ {(피해크

10) 법 이론에서는 처벌대상자의 재범가능성이 크다고 해서 그에게 그가 지은 죄크기보다 더 큰 처벌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법률은 처벌의 下限이 아닌 上限만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있다(이재상, 1994 참조).

기×책임크기)+재범가능성]의 공식에서 처벌크기가 밑줄 친 부분인 피해크기와 처벌대상자의 책임크기에 의해 결정되는지를 경험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이다.

두 요인의 결합 방식이 '승법적'인지의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이다. 그 중 하나는 두 요인 중 어느 하나의 크기를 0으로 제시하여 다른 요인의 크기에 관계없이 처벌크기가 0으로 나타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또 다른 하나는 두 요인의 크기를 모두 0보다 크게 제시한 다음, 두 요인이 처벌크기에 미치는 효과의 양상을 분석하는 것이다. 만약 두 요인이 승법적 결합의 형태로 결합된다면, (1) 처벌대상자가 유발한 피해의 크기가 클 수록, 또한 그의 책임크기가 클 수록, 그에게 부여되는 처벌크기는 커야 한다. (2) 두 요인간의 상호작용 효과도 유의하고 그것의 효과가 부채꼴 형태로 나타나야 한다. 왜냐하면 두 요인간의 '곱하기'는 변량분석에서 반드시 두 요소간의 상호작용 효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Hommers & Anderson, 1989 참조). 두 요인이 곱의 형태로 결합되는지의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두 방법 중에서 본 연구는 후자의 방법을 선택하였다.

연구1과 연구2는 공통적으로 위의 공식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였지만, 다음의 몇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첫 번째는 책임크기의 조작 방식이 두 연구에서 각기 달랐다. 특정 행위결과에 대한 행위자의 책임크기를 판단하는데는 환경적 힘의 크기, 행위자가 행위에 관여한 정도, 그리고 그가 특정 결과를 예견하고 있었는지의 여부와 같은 기준들이 사용된다(Shaver, 1975 참조). 먼저 연구1에서는 Shaver(1975)의 주장에 따라 처벌대상자가 피해를 일으킨 '행위에 관여한 정도'로서 책임크기를 조작하였다. 즉 처벌대상자의 관여도가 큰 조건을 책임이 큰 조건으로, 관여도가 작은 조건을 책임이 작은 조건으로 (조작적) 정의하였다. 연구2에서는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의 폭행을 유발한 정도로서 조작하였다. 폭행 가해자(처벌대상자)의 책임크기는 그의 행동유발에 대한 환경적 힘의 크기가 증가할 수록 작게 지각되기 때문에(Heider, 1958), 피해자의 책임이 클 수록 처벌대상자의 책임은 작은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두 번째 차이점은 연구설계이다. 연구1에서는 처벌대상자의 책임크기는 집단내 변인으로, 피해크기는 집단간 변인으로 조작된 설계(즉 split-plot factorial design)를 사용하였고, 연구2에서는 두 독립변인인 책임크기와 피해크기가 모두 집단간 변인으로 된 설계(즉 completely randomized factorial design)를 사용하였다.

세 번째 차이점은 연구에 사용된 시나리오의 사건 내용이다. 연구1에서는 강도사건을, 그리고 연구2에서는 폭행사건을 다루었다. 만약 두 연구 모두에서 같은 결과를 얻는다면, 처벌크기 판단 공식의 일반화에 도움을 줄 것이다.

연구 1

방법과 절차

피험자 연구1에 참여한 피험자는 경남대에서 교양과목 '심리학'을 수강하는 남녀 대학생 70명(남 33명, 여 37명)이었다. 대략 조건별 남녀 비율이 비슷하였고, 피험자의 성차 효과는 연구의 주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후에도 남녀별 분석은 하지 않았다.

연구설계 피해크기(2)와 책임크기(2)의 수준에 따른 2×(2)에서 책임크기 요인이 반복측정된 요인설계이었다.

독립변인 첫 번째 독립변인인 '책임크기'는 두 수준으로 조작되었다. 즉 책임이 큰 조건은 강도사건 시나리오에서 범행을 계획하여 동료에게 그것을 제안한 행위자(이하 주범)의 경우이었고, 책임이 작은 조건은 주범의 범행제안에 따라 훔친 돈의 40%를 받는 조건으로 범행에 동의한 행위자(이하 공범)의 경우이다. 두 번째 독립변인은 '피해크기'으로서 이는 피해자가 입은 재산과 인명피해의 크기로 조작되었다. 피해가 큰 조건에서는 '강도-살인 사건'이라는 제목 하에 두 행위자가 한 음식점에서 현금과 수표 1,000만원 어치를 훔치고, (본의는 아니었지만) 피해자인 주인을 사망케 한 것으로 묘사된 시나리오를 사용하였다. 반면에 피해가 작은 조건에서는 '강도-

상해 사건'이라는 제목 하에 두 행위자가 한 음식점에서 현금과 수표 300만원 어치를 훔치고, (본의는 아니었지만) 피해자인 주인에게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것으로 묘사된 시나리오를 사용하였다. 다음은 피해크기가 큰 강도-살인 사건의 시나리오 내용이다 (괄호 속은 피해크기가 작은 강도-상해 사건의 경우에서 밑줄 친 부분을 대체한 내용이다).

최철승씨(31세,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와 염홍섭(30세, 경기도 시흥시)은 지난 8월 1일 강도-살인 혐의(강도-상해 혐의)로 영등포 지검에 기소되었다. 이들은 7월 29일 새벽 3시경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에 있는 H 음식점에 몰래 들어가 주인 송영삼씨(35세)를 살해하고(다치게 하고) 현금과 자기앞 수표 등 약 1,000만원(300만원)을 훔친 혐의이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최철승(31세)이 범행을 계획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염홍섭(30세)에게 범행을 제안하였고, 염홍섭은 훔친 돈의 40%를 받는다는 조건으로 범행에 동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이 H 음식점의 금고를 털고 있던 중, 안방에서 잠을 깬 주인 송씨가 이를 발견하고 범인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몰래 경찰에 신고하였다. 그러나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범인들이 돈을 갖고 도망치려 하자 송씨는 옆에 있던 몽둥이를 들고 범인들에게 달려들었다. 이로 인해 두 명의 범인과 주인 송씨가 난투극을 벌이게 되었고 그 와중에서 송씨는 사망하였다(기절했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그의 사체를 부검한 의사에 따르면 송씨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벽에 머리를 강하게 부딪치면서 일어난 뇌진탕이었다(송씨의 치료를 담당한 의사에 따르면 송씨는 벽에 머리를 강하게 부딪치면서 일시적인 뇌진탕을 일으킨 것으로, 약 2주일간의 통원치료를 받으면 후유증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범인들은 범행 다음날 경찰에 의해 모두 체포되었다.

위의 시나리오에서 판단자들은 주범이 공범보다 강도 행위의 관여 정도가 크다는 것이외에, 공범보다는 주범에게 살인(혹은 상해) 혐의를 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시나리오 후반에 다음과 같은 정보를 추가적으로 제시하였다.

(피해자인) 주인이 사망한 원인(혹은 부상당한 원인)은 벽에 머리를 부딪쳐 일어난 뇌진탕이었다. 그러나 두 행위자가 모두 피해자를 벽에 밀어 던진 사람은 서로 상대방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경찰도 누가 피해자 송씨를 죽게(혹은 다치게) 했는지는 알 수 없었다.

종속변인 주 종속변인은 두 처벌대상자(주범과 공범) 각각에게 부여된 처벌크기(구형량)이었다. 처벌크기는 "당신에게 위의 두 피고들을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면 각각에게 어느 정도의 법률적 처벌을 내리겠는가?" 라는 물음에 최하 1년에서 최고 30년(단위 年)의 징역범위 내에서 각각 판결하도록 하였다. 판결 순서는 피험자의 반은 주범을 먼저, 그리고 나머지 반은 공범을 먼저 판결하도록 하였다. 그 다음으로 독립변인의 조작을 확인하기 위해 "이 사건의 전체 책임(100%)을 두 피고 각각에게 분할하도록" 하였고,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크기"를 매우 작다(1)에서 매우 크다(7)의 7점 척도 상에 평정하도록 하였다.

절차 피험자들은 1~3명씩 실험에 참석하였다. 먼저 피험자에게 실험개요를 알려 준 다음, 독립변인이 조작된 두 종류의 시나리오 중 한 가지와 종속변인의 측정을 위한 물음들이 담긴 책자를 제시하였다. 피험자의 응답 소요 시간은 총 15~20분이었다.

결과와 논의

독립변인의 조작점검 먼저 독립변인이 의도대로 조작되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물음에 대한 피험자들의 반응을 분석하였다. 첫 번째 독립변인인 행위자의 책임크기가 주범과 공범간에 차이를 보이는지를 알아 본 결과, 피험자들은 전체 책임 100%중 주범에게 평균 61%, 그리고 공범에게 평균 39%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F(1, 68)=61.95$, $p<.001$. 또한 70명 중 주범에게 더 많은 책임을 부여한 사람은 44명, 공범에게 더 많은 책임을 부여한 사람은 0명, 그리고 똑 같은 책임을 부여한 사람은 26명이었다, $\chi^2(1)=42.02$, $p<.001$. 그러므로 책임크기의 조작은 성공적이었다.

지각된 피해크기를 알아보기 위한 물음에 대한 반응에서도 강도-살인 사건($M=6.57$)에서가 강도-상해 사건($M=5.29$)에서보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더 크다고 응답하였다, $F(1, 68)=26.69$, $p<.001$. 즉 피해크기의 조작도 성공적이었다. 독립변인의 조작점검을 위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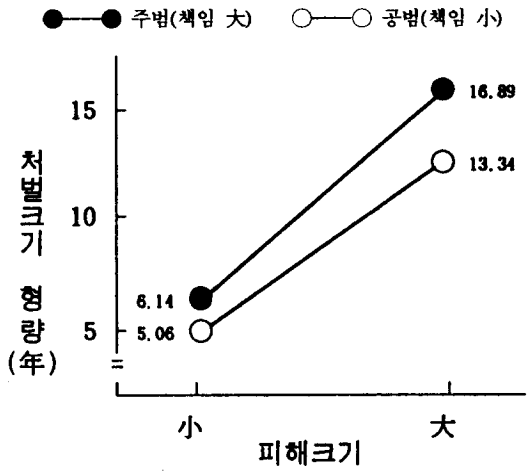

그림 1. 책임크기와 피해크기에 따른 처벌대상자의 처벌크기(형량)

두 분석에서 그 이외의 주 효과와 상호작용 효과는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독립변인에 따른 처벌크기 차이 주 종속측정치는 주범과 공범에게 내려진 구형량의 크기이었다. 피험자들이 최하 징역 1년에서 최고 징역 30년의 범위 내에서 두 범인(주범과 공범) 각각에게 내린 형량을 피해크기에 따라 변량분석하였다. 그 결과 범인들의 책임크기에 따른 처벌크기의 주 효과가 유의하였다, $F(1, 68)=53.18$, $p<.001$. 즉 책임이 큰 주범($M=11.52$년)이 책임이 작은 공범($M=9.20$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또한 피해크기의 주 효과가 유의하였다, $F(1, 68)=42.53$, $p<.001$. 즉 피해자의 피해크기가 큰 강도-살인의 경우($M=15.12$년)에서가 피해크기가 작은 강도-상해의 경우($M=5.60$년)에서 보다 범인들에게 더 무거운 처벌이 주어졌다.

연구의 관심사인 책임크기와 피해크기의 상호작용 효과도 유의하였다, $F(1, 68)=14.99$, $p<.001$. 이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그림1이다.

위의 상호작용 효과를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단순주 효과 검증(Duncan 검증)을 하였다. 그 결과 피해크기가 큰 조건(강도-살인 사건)과 작은 조건(강도-상해 사건) 모두에서 공범보다 주범에게 큰 처벌이 부여되었다, 각각 $F(1, 34)=35.85$, $F(1, 34)=22.36$, $ps<.01$. 또한 주범과 공범의 형량차이가 피해크기에 따라 다른 지를 알아 보기 위해, (주범형량-공범형량)을 피해크기에 따라 비교하였다(차-차이 검증). 그 결과 피해가 큰 조건에서의 주범과 공범의 형량 차이($M=3.54$년)가 피해크기가 작은 조건에서의 둘간의 형량 차이($M=1.09$년)보다 더 컸다[11], $F(1, 68)=14.99$, $p<.01$. 이는 책임크기와 피해크기가 가산적이 아니라 '곱하기'에 의해 이루어 질 것이라는 본 연구의 예언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만약 두 요소가 가산적으로 처벌크기에 영향을 주었다면, 변량분석에서 두 요소의 주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해야 하지만, 이것들의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아야 한다. 왜냐하면 개념적으로 두 요소가 '곱하기'에 의해 결합된다는 것은 변량분석에서 두 요소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함을 예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구1에서 사용한 독립변인이 모두 두 수준인 관계로 상호작용은 유의했지만, 상호작용의 형태를 관찰하는데는 미흡하였다. 두 독립변인이 곱의 형태로 결합되면, 상호작용의 형태가 부채꼴 모양을 띈다. 즉 한 변인의 효과는 또 다른 변인의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더욱 커지는 양상을 띄게 된다. 그러므로 상호작용의 형태를 보다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는 독립변인의 수준을 3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연구2를 수행하였다.

연구 2

연구2에서는 연구1과는 다른 방식으로, 즉 Heider (1958)의 주장에 따라 처벌대상자의 책임크기를 조작하였다. 또한 연구설계와 사건 시나리오를 변경하였다(개요 참조). 그런 다음 연구1의 결과가 반복되는지

11) 피해크기가 작은 경우보다 큰 경우에서 주범과 공범의 처벌크기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난 원인이 처벌크기의 단위차이 때문일 수도 있다. 즉 큰 처벌들에서의 3년 차이는 작은 처벌들에서의 1년 차이와 비슷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주범과 공범의 처벌크기(형량)를 log10 치환한 후, 이를 분석했을 때도 여전히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했다, $F(1, 68)=4.22$, $p<.05$. 그러므로 위의 염려는 해소되었다.

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과 절차

피험자 피험자는 경남대에 재학중인 남학생 180명이었다. 이들은 한번에 9명씩 연구에 참여하였고, 9조건 각각에 한 명씩 무선배정되었다.

연구설계 설계는 피해크기(3)×책임크기(3)의 요인설계이었고, 각 조건에 20명의 피험자를 무선배정하였다.

독립변인 독립변인 중의 하나인 처벌대상자의 책임크기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때려 다치게 한 폭행사건 시나리오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폭행을 유발한 정도의 크기로 조작하였다. 즉 피해자가 유발시킨 폭행일 수록 가해자의 책임은 작은 것으로 조작하였다. 다음은 연구2에서 사용한 폭행사건 시나리오의 예이다.

> 임철수씨(33세, 가명, 부산시 진구)는 지난 12월 20일 폭력상해 혐의로 부산지검에 기소되었다. 그는 전 날밤 9시경에 술집 '초원'에서 평소에 업무관계로 알고 지내는 민홍철씨와 술을 마시는 도중, 민씨를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이다. 임철수씨는 술집 종업원에 의해 경찰에 인계되었다.
> (1) 이날의 사건은 가해자 임철수씨가 이야기 도중 갑자기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 민홍철씨의 얼굴을 때림으로써 발생하였다. (2) 조사결과 피해자 민홍철씨의 상처는 간단한 치료(전치 1주)만 받으면 되는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 주변 사람들에 따르면 가해자 임철수씨는 성품이 과격한 편이었고, 작년에 부인과 이혼하여 혼자 살고 있었다. 또한 가해자 임철수씨는 지난 달에도 직장동료와 술을 마시다 그를 때려 상처를 입힌 적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가해자의 책임크기는 小, 中, 그리고 大의 3수준으로 조작되었고, 위의 시나리오 예는 책임크기 大조건이다. 책임크기 中조건에서는 위의 시나리오 중 밑줄친 (1)부분이 "이날의 사건은 이야기 도중 피해자 민홍철씨가 가해자 임철수씨의 말꼬리를 의도적으로 물고 늘어지며 업신여기는 태도를 보이자, 가해자 임씨가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 민홍철씨의 얼굴을 때림으로써 발생하였다"이었고, 책임크기 小조건은 "이날의 사건은 이야기 도중 피해자 민홍철씨가 가해자 임철수씨의 말꼬리를 의도적으로 물고 늘어지며 심한 욕설과 함께 마시던 술을 가해자 임씨에게 껴얹자, 가해자 임씨가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 민홍철씨의 얼굴을 때림으로써 발생하였다"이었다.

또 다른 독립변인인 피해크기는 폭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부상의 정도로서 小, 中, 그리고 大의 3수준으로 조작되었다. 위 시나리오의 예는 피해크기 小조건이다. 피해크기 中조건에서는 위 시나리오의 밑줄친 (2)부분이 "조사결과 피해자 민홍철씨의 상처는 심하지는 않았지만, **전치 5주** 정도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이었고, 피해크기 大조건에서는 "조사결과 피해자 민홍철씨의 상처는 상당히 심해 완치되려면 **전치 10주** 가량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이었다.

종속변인 종속변인인 처벌크기는 가해자에 대한 징역 형량(개월 수)이었다. "만약 당신이 위 사건의 가해자에게 처벌을 내려야 하는 사람(예 : 재판관)이라면, 당신은 그에게 어느 정도의 법률적 처벌을 내리겠습니까?"라는 물음에 최하 0개월 - 최대 20개월 징역의 범위 내에서 2개월 단위의 11점 척도 상에 평정하도록 하였다.

결과와 논의

피해자의 피해크기(3 조건)와 가해자의 책임크기(3 조건)에 따른 조건별 가해자에 대한 평균 형량은 다음의 표2에 요약되어 있다.

이를 변량분석한 결과, 피해크기와 책임크기의 주효과가 모두 유의하였다, 각각 $F(2, 171)=16.34$, $p<.001$; $F(2, 171)=8.96$, $p<.001$. 이는 책임크기를 연구1과는 다른 방식으로 조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1의 결과

표 2. 책임크기와 피해크기에 따른 처벌대상자의 형량평균

책임크기/피해크기	大	中	小	전체
大	13.90	8.20	5.40	9.17
中	10.00	7.50	7.30	8.30
小	7.10	6.10	4.10	5.77
전 체	10.33	7.27	5.63	7.74

수치는 징역의 개월 수임(범위 0개월 - 20개월), 모든 조건 $n=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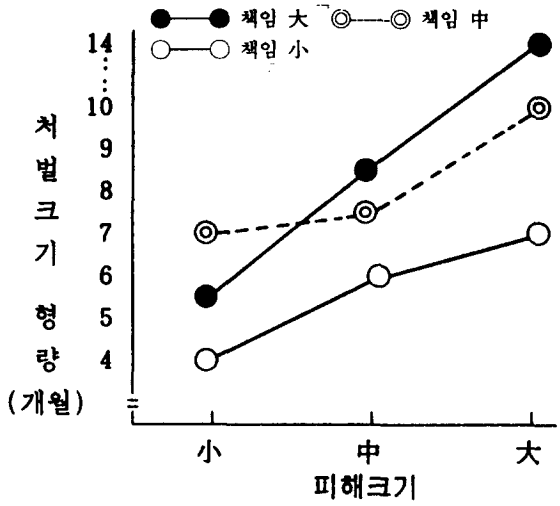

그림 2. 책임크기와 피해크기에 따른 처벌크기(형량)

와 일치하는 것이다. 연구2의 관심사인 피해크기와 책임크기 요인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였다[12], $F(4, 171)=2.96$, $p<.03$. 이 상호작용 효과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그림2이다.

그림2에서 보듯, 처벌대상자에게 부여된 형량은 책임크기와 피해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부채꼴 형태로 나타났다. 이는 두 요인이 비가산적 방식으로, 즉 곱의 형태로 처벌크기에 영향 주고 있음을 의미한다. 책임크기 中조건은 예상한 결과를 보여 주고 있지 못하지만, 이 조건을 제외한다면, 책임크기와 피해크기에 따른 처벌크기의 양상이 부채꼴 형태를 띄고 있음이 두드러진다.

연구 3

연구3은 처벌크기 판단공식 (1)에서 제안한 것처럼, '죄크기'와 '재범가능성 크기'가 가산적으로 처벌크기를 결정하는지의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죄크기는 정의상 처벌대상자의 책임크기와 피해크기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둘 모두로서 조작하였다. 즉 처벌대상자의 책임크기와 피해크기가 모두 클 수록 죄는 큰 것으로 정의하였다.

12) log10 치환 후의 분석결과도 대동소이 하였다.

처벌대상자의 책임크기는 연구2에서 처럼 처벌대상자의 행위를 유발시킨 환경적 요인으로 크기로 조작하였다. 폭행사건에서 피해자가 폭행을 유발하게 만든 책임이 클 수록 처벌대상자(여기서는 가해자)의 책임은 작게 지각될 것이다. 그러므로 폭행사건 피해자의 폭행유발 책임크기를 변화시킴으로써 처벌대상자의 책임크기를 조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반면에 피해크기는 비교적 객관적인 지표를 사용하여 변화시켰다. 즉 폭행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부상의 정도를 전치 1주, 전치 5주, 혹은 전치 10주라고 알려 줌으로써 조작하였다.

처벌대상자의 재범가능성 크기는 그의 외모로부터 추정되기도 하고(예: Esses & Webster, 1988), 그의 개인적 특징이나 성격특성에서 추정되기도 한다(예: 고재홍, 1992; Kaplan & Kemmerick, 1974). 여기서는 처벌대상자의 과거 전력, 결혼상태, 그리고 성품을 호의적으로, 혹은 비호의적으로 기술함으로써 조작하였다.

만약 처벌크기가 죄크기와 재범가능성 크기의 가산적 결합으로 결정된다면, 처벌대상자의 죄크기에 의해 결정된 처벌크기는 그의 재범가능성 크기에 의해 **교정**될 것이다. 즉 두 요인의 주 효과는 각각 유의하겠지만, 둘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방법과 절차

피험자 피험자는 경남대 1학년생 189명(남자 65명, 여자 124명)이었다. 조건별 남녀 비율은 대략 1:2의 비율의 되도록 하였다. 이들은 한번에 3~6명씩 연구에 참여하였으나, 별도의 좌석에서 각기 다른 조건에 배정되었다.

연구설계 설계는 죄크기와 재범가능성 크기가 각각 3수준인 3×3의 요인설계였고, 각 조건에 21명의 피험자를 무선배정하였다.

독립변인 연구3의 독립변인은 두 가지었다. 하나는 처벌대상자의 '죄크기'로서 이는 3수준으로 조작되었고, 연구2에서 사용된 폭행사건 시나리오에서 피해자가 입은 부상정도(피해크기)와 처벌대상자의 폭

행발생 책임크기가 모두 큰 조건을 '죄가 큰 조건'으로, 둘 모두 중간인 조건을 '죄가 중간인 조건'으로, 그리고 둘 모두 작은 조건을 '죄가 작은 조건'으로 조작하였다. 다음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폭행사건 시나리오의 예(죄가 큰 조건임)이다.

임철수씨(33세, 가명, 부산시 진구)는 지난 12월 20일 폭력상해 혐의로 부산지검에 기소되었다. 그는 전 날밤 9시경에 술집 '초원'에서 평소에 업무관계로 알고 지내는 민홍철씨와 술을 마시는 도중 민씨를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이다. 임철수씨는 술집 종업원에 의해 경찰에 인계되었다.

이날의 사건은 가해자 임철수씨가 이야기 도중 갑자기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 민홍철씨의 얼굴을 때림으로써 발생하였다. 조사결과 피해자 민홍철씨의 상처는 상당히 심해 완치되려면 전치 10주 가량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죄크기가 중간인 조건은 위의 시나리오에서 밑줄친 부분의 내용이 "이날의 사건은 이야기 도중 피해자 민홍철씨가 가해자 임철수씨의 말꼬리를 의도적으로 물고 늘어지며 업신여기는 태도를 보이자, 가해자 임씨가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 민홍철씨의 얼굴을 때림으로써 발생하였다. 조사결과 피해자 민홍철씨의 상처는 심하지는 않았지만, **전치 5주** 정도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이었다. 또한 죄크기가 작은 조건은 "이날의 사건은 이야기 도중 피해자 민홍철씨가 가해자 임철수씨의 말꼬리를 의도적으로 물고 늘어지며 심한 욕설과 함께 마시던 술을 가해자 임씨에게 껴 얹자, 가해자 임씨가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 민홍철씨의 얼굴을 때림으로써 발생하였다. 조사결과 피해자 민홍철씨의 상처는 간단한 치료(**전치 1주**)만 받으면 되는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이었다.

재범가능성 크기는 처벌대상자의 과거 폭행전력, 결혼상태, 그리고 성품으로 조작하였다. 재범가능성이 큰 조건에서는 위의 시나리오 다음에 "주변 사람들에 따르면 가해자 임철수씨는 성품이 과격한 편이었고, 작년에 부인과 이혼하여 혼자 살고 있었다. 또한 가해자 임철수씨는 지난 달에도 직장동료와 술을 마시다 그를 때려 상처를 입힌 적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라는 정보가 첨가되었다. 재범가능성 크기가 중간인 조건에서는 위의 정보 대신에 "주변 사람들에 따르면 가해자 임철수씨는 성품은 평소 과격한 편이고 작년에 부인과 이혼하여 현재는 혼자 살고 있으며, 고집이 센 편이어서 직장 동료들과도 말다툼은 많은 편이었다. 그러나 남에게 폭행을 가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라는 정보를 주었고, 재범가능성이 작은 조건에서는 "주변 사람들에 따르면 가해자 임철수씨는 성품이 온화한 편이었고, 부인과 두 자녀와 함께 살고 있으며, 평소에 다른 사람과 다툰 적이 거의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정보를 대신 제공하였다.

종속변인 종속변인인 처벌대상자에 대한 처벌크기는 형량으로, 연구2와 동일하게 최하 0개월 - 최대 20개월 징역의 범위 내에서 2개월 단위의 11점 척도상에 평정되었다. 이외에도 피험자들에게 처벌대상자의 죄크기를 '전혀 없다(0) - 매우 크다(10)'의 11점 척도 상에 응답하도록 하였고, 재범가능성 크기는 '전혀 없다(0) - 매우 높다(10)'의 11점 척도 상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결과와 논의

총 189명의 피험자 중 3명(죄크기 中-재범 低 조건 1명, 죄크기 小-재범 高 조건 1명, 그리고 죄크기 小-재범 低 조건 1명)은 반응누락과 이해부족으로 최종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독립변인의 조작점검 먼저 독립변인에 따른 처벌대상자의 죄크기 지각치를 분석한 결과, 죄크기를 달리한 시나리오의 효과가 유의하였다, $F(2, 177)=105.80$, $p<.01$. 이를 개별비교(Duncan 검증)한 결과 죄크기 小조건($M=2.48$), 中조건($M=4.02$), 그리고 大조건($M=7.13$)의 순서이었다(모든 $ps<.01$). 또 예상하지 못했던 처벌대상자의 재범가능성 요인도 죄크기 지각에 영향을 주었다, $F(2, 177)=15.14$, $p<.01$. 즉 재범기능성이 높을 수록 죄가 큰 것으로 지각되었다 : 재범 低조건($M=3.59$), 中조건($M=4.73$), 그리고 高조건($M=5.35$)의 순서이었다($ps<.01$).

재범가능성 추정치를 재범가능성의 크기를 달리 조작한 시나리오에 따라 분석한 결과, 시나리오의 재

범가능성 효과가 유의하였다, $F(2, 177)=45.39$, $p<.01$. 즉 피험자들의 재범추정치는 재범가능성 高조건($M=7.24$), 中조건($M=5.33$), 그리고 低조건($M=3.39$)의 순서이었다(모든 $ps<.01$). 그러나 죄크기의 조작에 따른 재범가능성 추정치는 다르지 않았다, $F<1$, *ns*. 그러므로 처벌대상자의 재범가능성 크기를 그의 폭행전력, 결혼상태, 그리고 성품으로 조작한 것은 성공적이었다.

독립변인에 따른 처벌크기 피험자의 성별에 따른 처벌크기의 차이를 알아 본 결과, 남자 판단자들($M=4.0$개월)보다는 여자 판단자들($M=6.15$개월)이 처벌대상자에게 더 무거운 처벌을 부여하였다, $F(1, 166)=13.40$, $p<.01$. 그러나 조건별 남녀 비율이 동일(1 : 2)했고, 성과 다른 독립변인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모두 유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의 분석에서 피험자의 성별을 무시하였다. 다음의 표3에는 조건별로 주 종속변인인 피험자들이 처벌대상자에게 부여한 처벌크기(형량)가 나와 있다.

형량의 개월 수를 $\log_{10}$ 치환(단, 징역 0개월인 경우는 1개월로 환척한 후, $\log_{10}$ 치환했음)한 다음, 처벌대상자의 죄크기와 재범가능성이 그에게 부여된 처벌크기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3×3 변량분석하였다[13].

변량분석 결과, 처벌대상자의 죄크기 주 효과가 유의하였다, $F(2, 177)=32.33$, $p<.001$. 이를 개별비교(Duncan 검증)한 결과, 처벌크기는 죄크기 大조건($M=7.94$년), 中조건($M=5.39$년), 그리고 小조건($M=2.82$년)의 순서이었고 모든 비교 쌍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s<.01$). 또한 재범가능성 크기의 주 효과도 유의하였다, $F(2, 177)=25.22$, $p<.001$. 이를 개별비교(Duncan 검증)한 결과, 처벌크기는 재범가능성 高조건($M=7.52$년), 中조건($M=5.59$년), 그리고 低조건($M=3.08$년)의 순서이었고, 역시 모든 비교 쌍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s<.05$). 그러나 두 요인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F<1$, *ns*. 이상의 결과는 두 요인이 가산적으로 결합되어 처벌크기를 결정하는데 기여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그림2 참조).

표 3. 죄크기와 재범가능성 크기에 따른 처벌크기의 평균

죄크기/재범크기	高	中	低	전 체
大	10.57(n=21)	8.67(n=21)	4.57(n=21)	7.94(n=63)
中	7.62(n=21)	5.33(n=21)	3.10(n=20)	5.39(n=62)
小	4.20(n=20)	2.76(n=21)	1.50(n=20)	2.82(n=61)
전 체	7.52(*n*=62)	5.59(*n*=63)	3.08(*n*=61)	5.41(*n*=186)

수치는 징역의 개월 수임(범위 0개월 - 20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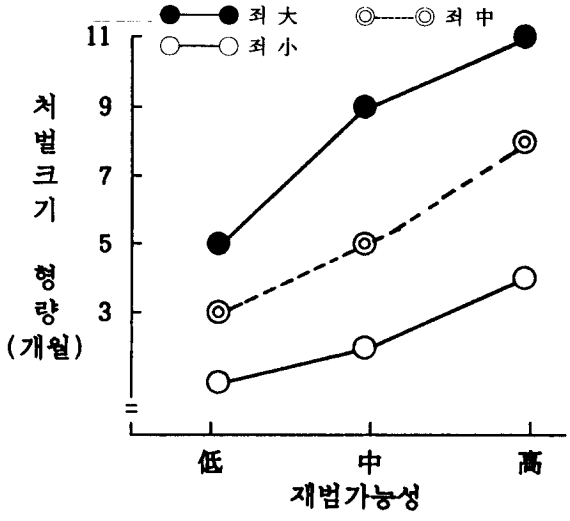

그림 3. 죄크기와 재범가능성 크기에 따른 처벌크기(형량)

요약과 전체 논의

연구1, 연구2, 그리고 연구3은 각각 처벌크기 판단의 정보통합 방식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형평이론으로부터 유도된 처벌크기 판단 공식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1과 2에서는 처벌크기가 죄크기(피해크기×책임크기)에 의해 결정되는지를 알아보았고, 연구3에서는 처벌크기가 죄크기와 재범가능성 크기의 가산에 의해 결정되는지를 알아보았다.

구체적으로 연구1에서는 처벌대상자의 책임크기를 그의 행위관여도 크기로 조작한 반면, 연구2에서는

13) 원자료인 형량크기를 변량분석했을 때도 동일한 결과를 얻었다. 즉 죄크기의 주 효과($F(2, 177)=33.02$, $p<.01$)와 재범가능성 크기의 주 효과($F(2, 177)=24.73$, $p<.01$)는 유의했으나, 둘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F(4, 177)=1.39$, *ns*.).

상대방(피해자)이 행위를 유발한 정도(환경적 힘)의 크기로 조작하였다. 또한 전자에서는 책임크기가 집단내 변인으로 다루어 진 반면, 후자에서는 그것이 집단간 변인으로 다루어 졌다. 두 연구 모두에서 책임크기와 피해크기가 조작되었고, 만약 두 요인의 乘에 의해 처벌크기가 결정된다면, 변량분석에서 두 요인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관찰될 것이란 예언은 지지되었다.

현재로서는 두 요인의 결합 방식이 승법적으로 이루어지는지의 여부는 두 가지 방식으로 검증이 가능하다. 첫째, 한 요인(예 : 처벌대상자의 책임크기)의 크기가 0인 경우 다른 한 요인의 크기에 관계없이 처벌크기가 0이라고 판단되면 두 요인은 곱으로 결합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통계적 검증으로 가능하다. 즉 두 요인이 포함된 변량분석에서 두 요인의 상호작용 효과가 관찰되고, 두 요인의 결합된 효과가 부채꼴 모양의 형태로 나타나면 두 요인은 곱으로 결합된다고 볼 수 있다(Hommers & Anderson, 1989 참조).

본 연구에서는 Hommers 등(1989)의 방식대로 두 요인이 곱에 의해 결합된다는 증거로서 변량분석의 상호작용 효과를 확인한 후, 두 요인에 의한 처벌크기가 부채꼴 형태인지를 관찰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통상 수식 상의 '곱하기'는 상호작용으로 해석된다. 예를 들어 Lewin의 場이론(field theory)에서도 $B=f(P\times E)$의 공식을 사용한다. 이 공식은 "행동(behavior)은 사람(person)과 환경(environment)간 **상호작용**의 결과"라고 해석된다. 본 논문에서의 책임크기는 위 공식에서 P요인의 크기에, 그리고 피해크기는 E요인의 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두 요인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고, 그 결과형태가 부채꼴인 경우라도 그 두 요인이 곱의 방식으로 결합되었다는 확증으로 보기 힘들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즉 또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런 결과형태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두 요인의 결합 방식이 곱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더 나은 방법이 없고, 위의 결과형태를 곱 이외에는 다른 분명한 대안적 설명이 없기 때문에 이 방법을 선택하였다.

연구3에서는 처벌대상자의 책임크기와 피해자의 피해크기로 정의된 처벌대상자의 죄크기와 그의 성품 등으로 조작된 재범가능성 크기가 가산적으로 처벌크기를 결정하는지를 알아보았다. 만약 처벌크기 판단시 두 요인이 가산된다면, 변량분석에서 두 요인의 주 효과만 유의하고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을 것이란 예언이 지지되었다. 이 결과로 볼 때, 처벌대상자의 처벌크기는 피해크기×책임크기로 정의된 그의 죄크기에 의해 결정되고 그의 재범가능성 크기에 의해 교정될 가능성이 크다.

사회적 판단(예: 인상판단)을 위한 정보통합의 형태는 가산모형(평균모형도 일종의 가산모형임)과 가중평균모형으로 요약되어 대별되어 왔다(Anderson, 1974 참조). 두 모형은 공통적으로 정보들의 평가치의 가산에 의해 사회적 판단이 이루어짐을 강조한다. 그러나 처벌크기 판단을 위한 정보들의 통합이 가산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작다. 왜냐하면 첫째, 처벌크기 판단 상황에서 사용되는 정보들은 서로 이질적이다. 즉 정보의 원천이 다르다. 이 중 책임크기는 당시의 상황과 행위내용에서, 재범가능성 크기는 그의 과거史와 주변의 평으로부터, 그리고 피해크기는 피해자 측에서 산출된다. 그러므로 정보들이 독립적일 수 있다. 이는 인상형성 연구에서 제공되는 정보들(성격형용사 혹은 행동들)이 모두 표적인물에게서 나온 것(그래서 정보들이 상관적인 경우)과 대비된다. 둘째, 정보들의 기능이 다르다. 즉 책임크기와 피해크기가 어느 하나라도 0인 경우 처벌대상자를 처벌할 수 없다. 즉 두 정보는 처벌크기 판단의 필요-충분 조건이다. 그러나 재범가능성 크기는 충분조건으로서 죄크기에 의해 잠정적으로 결정된 처벌크기를 교정시키는 역할을 할뿐이다. 이처럼 처벌크기 판단에 기여하는 정도가 처음부터 차등적이다. 이런 특징들 때문에 정보들의 통합이 가산에 의해 이루어질 가능성은 작다. 이전의 인상형성 연구들에서도 종속변인에 따라 정보통합 방식이 다를 수 있음이 시사되었다(조긍호, 1982 참조).

형평 이론(Adams, 1965)의 기본적 생각은 처벌크기

판단 상황에도 잘 적용되고, 실제로 많은 사회에서 형평 이론과 부합되는 법 이론과 법률을 채택하고 있다(예 : 응보주의 형법이론과 모세의 율법). 형평 이론의 관점에서는 처벌크기가 처벌대상자의 책임크기와 피해자의 피해크기의 곱으로 결정될 것임을 시사한다.

연구1과 연구2에서 위의 가능성이 검증되었다. 즉 두 요인이 특정 판단(여기서는 처벌크기 판단)의 필요-충분 조건인 경우, 두 요인은 곱으로 결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단지 특정 판단을 위한 충분조건에 해당하는 정보(여기서는 재범가능성 크기)는 가산적으로 통합된다고 할 수 있다(즉 사회적 정보의 통합은 가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기본-즉 default-이다).

연구3에서는 이 가능성이 검증되었다. 연구3에서는 피해크기와 처벌대상자의 책임크기를 함께 변화시켜 죄크기를 조작하였고, 처벌대상자의 성품 등으로 그의 재범가능성을 조작하였다. 그 결과 처벌크기에서 두 독립변인의 주 효과들만 유의하여 두 요인이 가산적으로 처벌크기를 결정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예상하지 않았던 피험자 변인(피험자의 성)이 처벌크기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로서는 왜 남자에 비해 여자 판단자가 같은 (폭행)처벌대상자에게 더 큰 처벌을 부여하는지 알 수 없으나, 이외에도 많은 피험자 변인들이 처벌크기의 차이를 만들어 낼 것으로 예상된다(고재홍, 1994 참조). 이런 변인들을 다루는 것도 하나의 연구주제가 될 것이다.

전형적인 인상형성 연구들에서 제시되는 정보들은 후자의 경우이다. 그러므로 '유령같은 타인(phantom-other)'의 인상형성을 위해 제시된 정보들의 통합방식은 통합의 기본 형태인(즉 default인) 가산방식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때 제시된 정보들은 필요-충분 조건도 아니며 서로 상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언제 정보들이 가산적으로 통합되며, 언제 정보들이 乘이나 혹은 또 다른 방식으로 통합될 수 있는지를 시사해 준다.

본 연구들의 제한점은 일반화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가 실제의 법정 장면과 같은 상황에 적용되기 어렵게 만드는 이유 중의 하나가 피험자의 문제이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 피험자는 처벌크기 판단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검사나 판사)과 몇 가지 점에서 구별된다. 첫째 후자의 사람들은 처벌크기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데 반해, 후자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둘째 전자의 사람들은 후자의 사람들에 비해 심증만으로도 처벌크기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처벌크기 판단과정이 다르다. 예를 들어 검사의 경우 처벌크기 판단에 이르게 되는 경로는 혐의포착→수사, 증거확보→유죄/무죄 판단, 그리고 유죄시→처벌크기 결정의 전 과정에 개입한다. 그러나 본 논문의 피험자는 실험자가 제시한 가상적 자료를 근거로 처벌크기 판단만을 하게 된다. 또한 처벌크기 판단의 상황이 다르다. 본 연구는 실험실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제 법정의 모의(simulation)연구라고 볼 수 없다. 이런 점들이 본 연구결과의 외적 타당도를 낮게 만든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주 관심이 처벌크기 판단에 사용되는 정보들의 통합방식에 있기 때문에, 즉 가설검증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실제의 법전문가인 피험자와 법정 장면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본 연구는 법정상황에 관심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처벌원리를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 사례를 이용한 것은 첫째 법률 사례에서 독립변인들을 조작하기 쉽기 때문이다. 둘째 법률 사례는 처벌원리가 적용되는 가장 대표적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한 실제와 다른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결과들(예: 처벌기준에 따른 처벌크기 차이, 처벌크기 판단에 이용되는 정보들)은 실제 상황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벌크기 판단과 관련된 연구가 보다 실용적인 함의를 지니기 위해서는 연구가 실제의 판결과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은 자명하다. 이런 연구를 위해서 본 연구들과 실제 판결과정간의 차이를 찾아보는 것도 가치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고재홍(1991). 잘못, 책임, 및 처벌: 처벌판단에 관한 한 가상적 모형. 韓國心理學會誌: 社會, 6, 1-21.

고재홍(1992). 처벌판단에 관한 한 가상적 모형(4). 서울대 사회심리 그룹세미나 발표논문.

고재홍(1994). 가해자의 외모와 형량판단간의 매개과정. 韓國心理學會誌: 社會, 8, 68-84.

김지현(1992). 법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선고목적 선호와 형량결정 과정에 미치는 선고 맥락의 효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박광배 · 홍성진(1993). 형사재판에서의 유 · 무죄 판결 및 선고의 일관성. 韓國心理學會誌: 社會, 7, 73-89.

이재상(1994). 刑法總論. 서울: 박영사.

조긍호(1982). 대인평가차원의 이원성에 관한 연구 - 호오성과 화친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Adams, J. S.(1965). Inequity in social exchange. In L. Berkowitz(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2(pp. 267-299). NY: Academic Press.

Allen, V. L.(1982). Effects of conformity pressure on justice behavior. In J. Greeberg and R. L. Cohen(Eds.), *Equity and justice in social behavior.* NY: Academic Press.

Anderson, N. H.(1965). Averaging versus adding as a stimulus-combination rule in impression formation.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70,* 394-400.

Anderson, N. H.(1974). Cognitive algebra: Integration theory applied to social attribution. In L. Berkowitz(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7(pp. 1-101). NY: Academic Press.

Anderson, N. H.(1981). *Foundations of information integration theory.* NY: Academic Press.

Austin, W., Walster, E., & Utine, M. K.(1976). Equity and the law: The effect of harmdoer's suffering in the act on liking and assigned punishment. In L. Berkowitz and E. Walster (Eds.),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9(pp. 163-190). NY: Academic Press.

Barnett, N. J., & Feild, H. S.(1978). Character of the defendant and length of sentence in rape and burglary crimes.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04,* 271-277.

Baker, K. A.(1974). Experimental analysis of third-party justice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0,* 307-316.

Bartol, C. R.(1991). *Criminal behavior: A psychological approach.*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Berg, K., & Vidmar, N.(1975). Authoritarianism and recall of evidence about criminal behavior.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9,* 147-157.

Bierhoff, H. W., Buck, E., & Klein, R.(1989). Attractiveness and respectability of the offender as factors in the evaluation of criminal cases. In H. Wegener, F. Lösel, and J. Haisch(Eds.), *Criminal behavior and justice system: Psychological perspectives*(pp. 193-207). NY: Springer-Verlag.

Carroll, J. S.(1978). Causal attribution in expert parole decis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6,* 1501-1511.

Carroll, J. S., & Payne, J. W.(1977). Crime seriousness, recidivism risk, and causal attributions in judgment of prison term by students and expert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62,* 595-602.

Carroll, J. S., Perkowitz, W. T., Lurigio, A. J., & Weaver, F. M.(1987). Sentencing goals, causal attribution, ideology, and personal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107-118.

Carroll, J. S., & Wiener, R. L.(1982). Cognitive social psychology in court and beyond. In A. H. Hastorf and A. M. Isen(Eds.), *Cognitive social psychology*(pp. 213-253). NY: Elservier North Holland.

DeJong, W., Morris, W. N., & Hastorf, A. H.(1976). Effect of an escaped accomplice on the punishment assigned to a criminal defenda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3,* 192-198.

Dion, K.(1972). Physical attractiveness and evaluation of children's transg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4,* 207-213.

Ebbesen, E. B., & Konečni, V. J.(1975). Decision making and information integration in the courts: The setting of bai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2,* 805-821.

Efran, M. G.(1974). The effects of physical appearance on the judgment of guilt, interpersonal attraction, and severity of recommended punishment in the simulated jury task.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8,* 45-54.

Esses, V. M., & Webster, C. D.(1988). Physical attractiveness, dangerousness, and the Canadian criminal code.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8,* 1017-1031.

Hastie, R.(1993). Algebraic models of juror decision processes. In R. Hastie(Ed.), *Inside the juror: The psychology of juror decision making*(pp. 84-115).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Heider, F.(1958). *The psychology of interpersonal relations.* NY: Wiley.

Herrntein, R. J.(1990). Rational choice theory: Necessary and sufficient. *American Psychologist, 45,* 356-376.

Hogarth, J.(1971). *Sentencing as a human process.*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Hommers, W., & Anderson, N. H.(1989). Algebraic schemes in legal thought and in everyday morality. In H. Wegener, F. Lösel, and J. Haisch(Eds.), *Criminal behavior and the justice system: Psychological perspective*(pp. 134-150). NY: Springer-Verlag.

Jones, C., & Aronson, E.(1973). Attribution of fault to a rape victim as a function of respectability of victi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6,* 415-419.

Kalven, H. K, & Zeisel, H.(1966). *The American jury.* Boston: Little, Brown.

Kaplan, M. F, & Kemmerick, G.(1974). Juror judgment as information integration: Combining evidential and nonevidential inform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0,* 439-499.

Landy, D., & Aronson, E.(1969). The influences of the characters of the criminal and victim on the decisions of simulated juror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5,* 141-152.

McFatter, R. M.(1978). Sentencing strategies and justice: Effects of punishment philosophy on sentencing decis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6,* 1490-1500.

McFatter, R. M.(1982). Purposes of punishment: Effects of utilities of criminal sanctions on perceived appropriatenes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67,* 255-267.

Mitchell, H. E., & Byrne, D.(1973). The defendant's dilemma: Effects of jurors' attitudes and authoritarianism on judical deci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6,* 123-129.

Monahan, F.(1941). *Women in crime.* NY: Washburn.

Nemeth, C. J.(1981). Jury trials: Psychology and law. In L. Berkowitz(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14(pp. 309-367). NY: Academic Press.

Nemeth, C. J., & Sosis, R. H.(1973). A simulated jury study: Characteristics of the defendant and the jurors.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90,* 221-229.

Posner, R. A.(1985). An economic theory of the criminal law. *Columbia Law Review, 85,* 1193-1231.

Reynolds, D. E., & Sander, M. S.(1975). Effects of defendant attractiveness, age, and injury on severity of sentence given by simulated jurors.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96,* 149-150.

Rose, A., & Prell, A.(1955). Does the punishment fit the crime? A study in social valuat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61,* 247-259.

Rosen, B., & Jerdee, T. H.(1974). Factors influencing disciplinary judgment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59,* 327-331.

Rubin, Z., & Peplau, A.(1975). Who believes in a just world? *Journal of Social Issues, 31,* 65-90.

Seligman, C., Brickman, J., & Koulak, D.(1977). Rape and physical attractiveness: Assigning responsibility to victims. *Journal of Personality, 45,* 554-563.

Shaver, K. G.(1975). *An introduction to attribution processes.* Cambridge, Mass: Winthrop.

Sigall, H., & Landy, D.(1972). Effects of the defendant's character and suffering on juridic judgment: A replication and clarificatio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88,* 149-150.

Sigall, H., & Ostrove, N.(1975). Beautiful but dangerous: Effects of offender attractiveness and nature of the crime on juridic judg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1,* 410-414.

Talarico, S. M.(1979). "What do we expect of criminal justice? Critical questions of sanction policy, sentencing purpose and the politics of reform." *Criminal Justice Review, 4,* 55-72.

Thomas, E. A. C., & Parpal, M.(1987). Liability as a function of plaintiff and defendant faul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 843-857.

Walster, E., Berscheid, E., & Walster, G.(1973). New directions in equity resear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5,* 157-176.

Wrightsman, L. S.(1991). *Psychology and the legal system.* CA: Brooks/Cole.

An Information Integration Approach to Punishment Judgment

Jae Hong Ko

Department of Psychology, Kyungnam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is concerned with identifying the information variables affecting punishment judgment. Punishment judgment, in the present study, was conceived as consisting of judgment of guiltiness and judgment of penalty. Three studies dealt with information variables affecting penalty judgment and the manner in which these information variables interact with each other in determining the judgment. An equation for penalty judgment was derived from the information integration theory of impression formation(Anderson, 1974) and equity theory(Adams, 1965): Penalty=(defendant's responsibility × severity of victim's outcome) + (recidivism risk). Study 1 and Study 2 verified the notion that defendant's responsibility and severity of outcome combine multiplicatively rather than additively in predicting penalty judgment. Study 3 showed that culpability(responsibility × outcome severity) and recidivism risk combine additively as the above model predicts.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present studies were discussed.